■[대회 참가 신청용 2024.9.1 이후 적용]

학교장 확인서

학교명	서울오류남초등학교		종목명	태권도
			출석인정 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학교 담당자	성 명	윤두영	종별	여자 초등 중학년
	연락처	02-2681-8466	적용년도 (기간)	2024년 ('24.9.1. ~ '25 2.28.)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 일수와 최저학력제 확인 현황

순	이름	①누적사용일수/인정일수	②최저학력제 확인(○,×)	순	이름	①누적사용일수/인정일수	②최저학력제 확인(○,×)
1	박채린	0/20	○	11		/	
2		/		12		/	
3		/		13		/	
4		/		14		/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 작성방법

① 학교급별 출석인정일수 적용: 대회·훈련 참가 누적사용일수 기입 / **출석인정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예) 학기 초부터 현재까지 대회 및 훈련참가 출석인정결석일수 종합이 10일 경우 ⇨ 표기: (고) 10/50

② 최저학력제: 단위 학교에서 확인 여부만 표시 ※ 학교장 확인: ○표시, 학교장 미확인: × 표시
※ '×' 표시는 최저학력 미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학교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기준) 초4 ~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
-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학생은 1학기 미도달 시, 해당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학기 미도달 시,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대회 참가 불가.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수 후 대회 참가 가능.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위와 같이 대회 및 훈련 출석인정 사용일수와 최저학력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오류남초등학교장 (직인)